2026년 제2차 AI · XR 얼라이언스 상생협력분과 회의 결과

1. 회의 개요

□ (일시/장소) ‘26.10.01.(목), 16:00~18:00 / MDIA 대회의실

□ (참석자) 상생협력분과 위원, NIPA, MDIA 등 14명

- 위원회 : 고형석 교수, 김건식 연구위원, 송혜진 박사, 김형건 박사, 권민혁 팀장, 김종원 팀장
- NIPA : 최창범 수석
- MDIA : 권기원 부회장, 서영석 센터장, 황철호 부장, 김성은 과장, 한찬엽 변호사, 박지현 대리, 김서현 사원

□ 프로그램

시 간	주요 내용	비 고
16:00~16:01	▸ 개회	
16:01~16:10	▸ 인사 말씀	분과장
16:05~17:00	▸ 발제 - 디지털콘텐츠 표준계약서 및 약관 개정시안 소개 · 신구비교 및 개정이유 발표	고형석 교수
17:00~18:00	- 디지털콘텐츠 표준계약서 및 약관 개정시안 검토 · 학계·산업계 전문가 의견 공유 및 수렴	
17:00	▸ 폐회	

2. 논의 내용

□ 디지털콘텐츠 표준계약서 및 약관 개정시안 소개

○ 도급 및 하도급 표준계약서

- 시용상품 등의 제작 및 표시의무에 있어, AI 윤리기준 및 AI 기본법상 표시 의무사항 및 권고사항 반영

- 원재료의 제공 등 하도급대금 연동제에 있어, 필수적 기재사항인 원재료 부분 반영

- 게임 표준계약서에 있어, 확률형 아이템 확률 표시 의무 등 표시
- 콘텐츠의 인수와 관련하여, 재검사 비용을 그 원인을 제공한 자에게 부담하도록 함
- 부당한 위탁취소 및 부당반품의 사례를 상세히 기재함
- 기술자료제공 강요금지에 있어, 제공 요구 목적을 상세히 규정함
- 기술자료 임치와 관련하여, 상생협력법에서 규정한대로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에만 기술자료 임치 요구가 가능하고, 제3자 기관에 임치하도록 하는 제도를 반영함
- 하도급대금 연동제에 있어, 주요 원재료에 에너지를 추가함
- 부당특약과 효력에 있어, 부당 특약의 사법적 효력을 계약에 포함하고자, 새로운 조항(3조의 4)을 신설함(1~3호는 당연무효, 4호의 경우 부당성이 현저한 경우에만 무효)
- 보복조치 금지에 있어, 법령상 원사업자가 보복조치를 할 경우, 3배까지의 손해배상 규정이 신설되어 이를 반영함
- 이행보증 및 대금지급보증과 관련하여, 기존 건설업만 하도급법상 의무로 규정되어 있었으나, 업계 현실과 영세업자 보호를 위하여 임의규정으로 포함
- 손해액의 추정에 있어, 구체적 손해액 입증의 어려움을 고려하여 추정규정을 포함함
- 금전채무불이행에 대한 손해배상의 특칙에 있어, 기존 민법상 불법행위 요건은 증명이 곤란하다는 이유로 고의 과실 추정 규정이 있었으나, 고의 과실을 증명할 경우 금전채무불이행이 면제되는지에 관한 업계의 질의가 있어, 민법상 규정(397조 2항)을 포함하여, 면제되지 않는다는 점을 확실히 함

○ 위탁매매 표준계약서

- 중개수수료는 할인 판매하였을 경우, 할인 가격 기준으로 중개수수료가 정해진다는 점을 확실히 함

- 그 외 하도급계약서상 반영사항 중 중복되는 사항을 반영함

○ 퍼블리싱 표준계약서

- 제작협의에 있어, 퍼블리싱만의 제작과 유통이 결합된 특이성을 고려하여, 제작과 유통에 관련한 내용을 모두 포함함

- 그 외 하도급계약서상 반영사항 중 중복되는 사항을 반영함

○ 표준약관

- 가상자산(암호화폐, NFT)과 같은 복제되지 않는 유형의 디지털 자산 등은 약관의 적용이 배제된다는 점을 명확히 함

- 격지자간 계약의 효력 발생 시기에 있어, 기존 전자거래기본법 내용을 반영하여 디지털콘텐츠 거래상 수신 확인 통지를 요하였으나, 최근 도달주의에 부합하는 내용으로 조항이 개정되었고, 민법 개정위원회에서도 디지털 통신 매체의 발전으로 인하여 도달주의를 채택하는 방향으로 개정안이 진행되고 있는바, 도달주의에 의한다는 내용으로 개정함

- 관련 내용 삭제 – 발신주의/도달주의 - 민법 개정위원회에서도 도달주의로 가고 있어서, 도달주의로 반영

- 그 외 표준계약서상 반영 사항 중 중복되는 사항을 반영함

□ 학계 · 산업계 전문가 의견 공유 및 수렴

○ 표준 하도급계약서에 반영된 증명책임 완화에 관한 사항도 포함하는 방향을 고려하고 있음

○ “인공지능 윤리기준”은 2026년 8월 21일 제정·공표 “대한민국 인공지능 윤리원칙”상 용어로 최신화할 필요가 있음

○ 인공지능 사용 표시 의무 부과 대상에 대하여, 저작권 등 지식재산권 귀속에 관련한 거래환경과 업계 현실을 반영하여 고민할 필요가 있음

- 현재 개정시안은 법률상 디지털콘텐츠를 납품받은 사람에게도 표시의무가 있기 때문에 최초로 AI를 이용하여 콘텐츠를 만든 자(수급사업자)가 최초로 표시 의무를 부담하는 것이 합리적이다는 고려에서 도출된 것임

- 표시 의무는 수익자 부담원칙을 적용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보임

- 제작자가 AI를 이용했다는 것을 표시하면, AI 사용을 자인함에 따라 저작권 등 권리를 취득할 수 없을 가능성이 있어 표시 의무를 회피하려고 할 가능성이 있기에, 법률상 강제하는 것이 옳은지에 대하여 이론적으로도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 고위험 인공지능과 관련한 조항 또한 인공지능 기본법상의 사업자에 대한 내용인바, 수급사업자에게까지 그 의무가 미치는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함

○ 표준계약서 본문과 표준 연동계약서(별첨)의 원재료에 대한 정의가 다름

- 공정위 표준계약서의 내용 또한 반영하여 문구상 상이점 발생하였으나, 내용상으로는 같음

○ 하도급대금 연동제상 주요 원재료는 비용이 하도급대금의 10% 이상인 원재료를 뜻하는 바, 일반적인 디지털콘텐츠 제작자에게 해당사항이 있을지 의문

- 상생협력법과 하도급법 개정이 개정되며, 하도급 계약서에 연동제 적용 여부를 필수적으로 기재하도록 규정되어 있기에, 관련 내용을 제외하면 하도급법 위반 여지가 있고, 만약 원재료 비용이 10% 이하인 경우에도, 사적자치에 의하여 연동제를 합의할 수 있기에 반영함

○ 중개 표준계약서상, 제3자 결제방식에서도 판매자가 환불책임을 질 수 있다는 규정이, 입점사업자들에게 부담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 관련 법률상, 연대규정에 의하여 입점사업자는 어떤 상황에서도 환불 책임이 면제되지는 않으나, 보다 사업자들이 부담을 느끼지 않을 만한 문구를 고려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 대금지급 보증 관련 조항의 경우, 대급지급 보증행위가 통상적으로 업계에서 이루어지고 있는지 의문임

- 현실적으로 잘 이행되고 있지 않고, 법률상 의무사항도 아니나, 영세 사업자 보호와 공정거래 환경 조성을 위하여 별도 합의할 경우 계약에 포함되도록 임의규정으로 기재하였음

○ 표준약관 제8조 4호 “기타 이에 준하는 정당한 사유” 조항은 지나치게 모호하여 소비자에게 불리한 조항이 아닌지 의문

- 디지털콘텐츠 표준약관은 범용이기 때문에, 장르별로는 별도 사유가 있더라도 별도 사유를 전부 기재하기는 어렵고, 그렇다고 다른 사유가 있다는 내용을 제외할 수는 없기 때문에 1호부터 3호까지 예시를 들고, 추가 내용을 장르별로 포함하도록 하였음

○ 표준약관 제13조 제7항 및 8항의 사이버몰 게시 관련 조항 역시 고시, 게시 방법을 조문에 포함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보임

- 전자금융거래법 등 약관 명시 및 변경 고시 방법을 고려

○ 표준약관 제38조상, 표시 및 고시 조항 역시 표시와 고시의 차이점과 방식을 조문에 포함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보임

- 전자상거래법상 규정사항에 해당하는 바, 전자상거래법 개정 추이를 보아 반영할 예정

○ 추후, 일반 사업자에게 부담을 줄 수 있는 조항의 수정 및 삭제와 이번 회의에 참석하지 못한 의원들의 의견을 고려하여 최종 개정안 및 신구대조표 및 개정사유를 포함한 최종보고서를 도출할 예정임

붙임1 2026년 제2차 AI · XR 얼라이언스 상생협력분과 회의 참여자 명단

No	소 속	성 명	비 고
1	한국해양대학교	고형석	분과장
2	한국공정거래조정원	김건식	
3	한국소비자원	송혜진	
4	한국법제연구원	김형건	
5	한국음악실연자연합회	권민혁	
6	㈜원스토어	김종원	
7	정보통신산업진흥원(NIPA)	최창범 수석	
8	한국가상융합디지털산업협회 (MDIA)	권기원 부회장	
9		서영석 센터장	
10		황철호 부장	
11		한찬엽 변호사	
12		김성은 과장	
13		박지현 대리	
14		김서현 사원	